

[ ] 지정  
자연휴양림 [ ] 지정해제 신청서  
[ ] 지정구역 변경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(기관명)	전화번호	
산림 소재지		구역면적	m <sup>2</sup>
자연휴양림 명칭			
자연휴양림 지정 (지정해제, 지정구역 변경) 신청사유			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3조·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·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 [ ]지정 [ ]지정해제 [ ]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가. 지번·지목·지적·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나.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말합니다) 1부 다.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(축적 2만5천분의 1) 및 구역도(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) 각 1부 라. 설치하려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마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. 다만,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,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(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2. 지정해제신청의 경우: 없음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